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제도 폐지 등 》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33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제221073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제도 폐지 (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44조)	3
나. 건설기계 검사 및 자가정비 규제 재검토 폐지(안 제39조의4 삭제)	7
다. 등록관청의 압류등록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12

I.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제221073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범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6. 11.

다. 회 부 일 : 2025. 6.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와 정비에 관한 규정에 규제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 2 신설, 제8조제1항 등 및 제39조의4 삭제).

3. 검토의견

가.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제도 폐지(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4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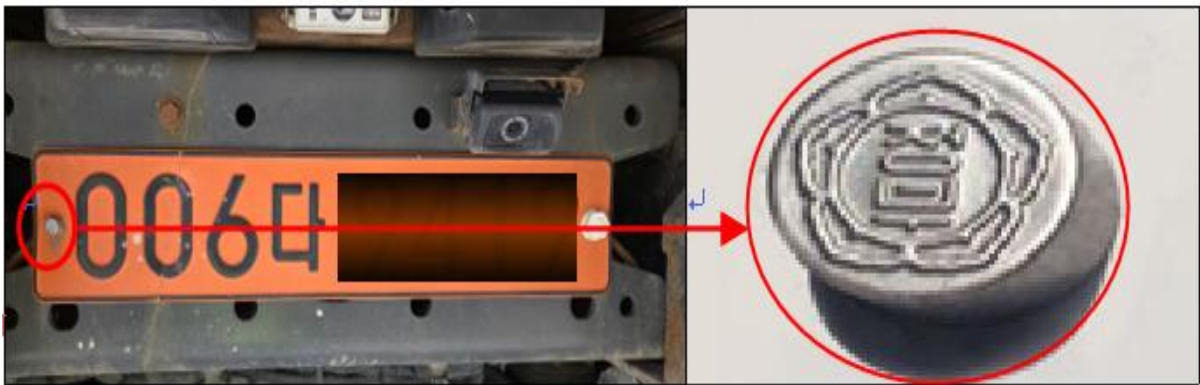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 ⑧ (생략)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를 한 후 해당 건설기계의 <u>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封印)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u>	⑨ ----- ----- ----- ---- <u>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를</u> -----.
⑩ · ⑪ (생략)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의 표식 등) ①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u>부착 및 봉인</u> 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제8조(등록의 표식 등) ① ----- ----- ----- <u>부착</u> ----- -----.
② 건설기계 소유자는 <u>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u>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u>부착 및 봉인</u>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u>등록번호표가</u> ----- ----- ----- <u>부</u> <u>착</u>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u>부착 및 봉인</u>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u>부착</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 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 내에 <u>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u> <u>후 그 등록번호표를</u>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 항제2호·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 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 ----- ----- ~~---등록번호표를---~~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u>부착 및 봉인</u> 을 신청하는 경우	3. ----- <u>부착</u> -----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 ----- -----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 표를 부착하지 <u>아니하거나 봉인하</u> <u>지 아니한</u>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1. ----- ~~-----아니한-----~~ -----
1의2. ~ 4. (생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 표를 <u>부착·봉인</u>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2. ----- ~~---부착---~~ -----
2의2. ~ 8. (생략)	2의2. ~ 8.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봉인’이란 건설기계의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위조 내지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1982년 (舊)「중기관리법」 제8조 및 제34조¹⁾에 신설되어 현행법에도 유지되고 있음.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 】



※자료: 국토교통부

봉인제도는 자동차 등록번호표에도 시행하던 제도로, 1962년에 자동차 등록번호표 도난이나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²⁾되어,

1) 「중기관리법」(법률 제34692호, 1981.12.17. 일부개정, 1982.3.17. 시행)

제8조 (등록의 표지) ①등록된 중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건설부장관의 봉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번호를 각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부착과 등록번호의 각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제34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봉인을 훼손·멸실한 자와 등록번호를 각자하지 아니한 자

2) (舊)「도로운송차량법」(법률 제962호, 1962.1.10. 제정 및 시행)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봉인) ①자동차소유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번호를 기재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대행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당해자동차에 달고

차량 관련 범죄를 줄이고 등록된 차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으나, IT기술의 발달로 CCTV와 차량인식기술을 통해 자동차 등록번호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잡으면서, 2025.2.21.부터는 자동차 등록번호표의 봉인제도가 폐지³⁾되었음.⁴⁾

등록번호표의 실시간 확인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기계 관리에 있어서도 자동차 등록번호표의 경우와 같이 봉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기술 발전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건설기계 봉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봉인제도 폐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관할관청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한 자동차등록번호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폐지 못한다.**

③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멸실되었거나 식별하기 곤란할 때 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양식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떼도록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를 달고 다시 봉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0339호, 2024.2.20. 개정, 2025.2.21. 시행)

4) 법무부 정책블로그(<https://blog.naver.com/mojjustice>),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5.4.16. 참고

나. 건설기계 검사 및 자가정비 규제 재검토 폐지
(안 제39조의4 삭제)

현행	개정안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정비 범위: 2016년 1월 1일	<삭 제>

개정안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검사(현행법 제13조)와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의 정비 범위(현행법 제16조의2)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9조의4는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와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정비 범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규제 재검토 대상인 현행법 제13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13조⁵⁾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16조의2⁶⁾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이하 “자가정비”라 함)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⁷⁾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5)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6)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정 비 작 업 의 범 위 (제41조관련)

1.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 (1) 오일의 보충
-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13조와 제16조의2에 대하여 3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39조의4를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그리스(grease)의 급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롤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쇼크 업소버(충격흡수장치)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자. 기 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정비 (2) 새시 각부의 급유

2.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을 갖춘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그리스의 급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2)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롤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쇼크 업소버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3) 차체 및 작업장치에 대한 부분용접

(가) 불도저·굴착기·로더 및 모터그레이더의 배토판·버킷·장삼날 및 귀삽날 등의 부분용접

(나) 덤프트럭의 적재물 누출방지를 위한 적재함의 부분용접

(다) 기중기·천공기·향타 및 향발기의 오가비트 및 오가(스크류)의 부분용접

(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흙받이 철판(철탄) 및 후부안전판의 보수를 위한 용접

(마) 배기관 파이프 및 소음기 보수를 위한 부분용접

(바) 탈부착이 가능한 운전석의 부분용접

(사) 발판등 경미한 부위의 부분용접

자. 기 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정비 (2) 새시 각부의 급유

삭제함으로써, 건설기계의 검사(현행법 제13조)와 자가정비(현행법 제16조의2)에 대한 규제 재검토를 폐지하려는 것임.

동 규정(현행법 제39조의4)은 2016.1.19. 「건설기계관리법」 개정⁸⁾ 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⁹⁾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¹⁰⁾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데,

이후 세 차례의 규제 재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2024년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는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 및 공해·소음 저감, 자가정비를 통한 부담 완화 및 자가정비 범위 명확화 등을 위해 건설기계 검사 및 자가정비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¹¹⁾

유사 입법례로서 「자동차관리법」도 제36조¹²⁾ 및 제43조¹³⁾에 따른

8)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3784호, 2016.1.19. 일부개정 및 시행)

9)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552호, 정부 제출) 검토보고, 2015.12. 참고

11) 제570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 2024.10.24.

12) 「자동차관리법」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

자동차의 자가정비와 검사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심사 결과와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건설기계 검사 및 자가정비의 규제 재검토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반복적인 규제 타당성 재검토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검사 및 자가정비는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타당성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바, 이와 관련된 규제 재검토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규제 재검토 폐지는 현행법 제39조의4의 삭제하는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3)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다. 등록관청의 압류등록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 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개정안은 시·도지사도 하여금 법원, 행정관청,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압류¹⁴⁾란, 국가권력이 특정의 유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하는 행위로, 특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로서 집행기관이 우선 채무자 재산의 사실상 또는 법률

14) 광의로는 국가권력이 특정의 유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하는 행위를 말한다. 협의로는 특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로서 집행기관이 우선 채무자 재산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며, 행정법상 국세채납처분의 한 단계로서 채납자의 재산을 강제처분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위에서 광의·협의의 압류가 「민사소송법」상의 압류이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상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행위를 말함.

사인 간의 관계에서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관청 등에 대하여 금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법원 또는 행정관청이 그 재산을 압류하여 압류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의무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미이행 채무 또는 미납 금전을 충당함으로써 채무 상환 또는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게 되며,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의 법률에서는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⁵⁾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채무 상환 또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는 건설기계도 해당되며,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 16), 「국세징수법」 17), 「지방세징수법」 18) 등은 법원 또는 행정관청 등이 건설기계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19)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원부를 관리

16)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①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登記官)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대법원규칙)

제6절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다음부터 “건설기계”라 한다)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다음부터 “소형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8조 내지 제110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어선원부·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본다.

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음부터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자동차집행”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17)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18) 「지방세징수법」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항공기등”이라 한다)
4.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는 시·도지사에게 압류등록을 할 것을 촉탁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²⁰⁾ 및 「선박법」²¹⁾은 건설기계와 마찬가지로 압류 대상 재산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및 선박에 대하여 각각 시·도지사 또는 소형선박 등록관청²²⁾²³⁾으로 하여금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점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1) 「선박법」

제8조의3(압류등록) 소형선박 등록관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선박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 ‘소형선박’과 ‘소형선박 외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서 각각 ‘등록’과 ‘등기’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음.

23) 「선박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 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박등기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桴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법원 또는 행정관청 등의 건설기계 압류등록 촉탁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촉탁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²⁴⁾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례²⁵⁾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의 압류등록 촉탁,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압류등록 촉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²⁶⁾에 따른 공공기관

24)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과 달리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건설기계 압류등록 촉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법원이나 행정관청의 건설기계 압류등록 촉탁이 있어도 일부 등록관청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등 혼선이 있다고 설명함.

25)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건설
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함
으로써, 건설기계 압류와 관련된 일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
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 압류가 필요한 경우,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등록관청이 압류등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바, 행정관청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관청인 시·
도지사의 압류등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